

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

- 코로나19에 대응하여 '20년 한시 운영 중인 「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,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·방법 안내
 - (신청 기간)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.1(화)~12.20(일)의 기간에 「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*(붙임1)」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
 - * 휴가 사전승인 확인(사업주 작성)+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(근로자 작성)
 -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.20(일)까지 신청 필요
 - (신청 방법)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(붙임3.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) 우편 신청

구분	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	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
신청 기간	~ '20.12.20.(일)	'20.12.1(화) ~ '20.12.20.(일)
제출 서류	< 필수 제출 > 1.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.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.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.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< 필요시 제출 > 1.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 정보 처리 등 동의서 2.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. 장애인증명서(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) 4. 한부모 근로자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)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* *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	좌측의 필요서류에 「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」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

- * 붙임1 :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양식
- 붙임2 : 자주 묻는 질문
- 붙임3 : 전국 고용센터 목록

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

<p>□ '20.12.15부터 12.31.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, 아래의 확인사항을 보시고 우측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구분	확인사항	서명
사업주	<p>○ 해당 근로자에게 아래의 사유로 '20.12.1. ~ '20.12.31.의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함 : 휴가 승인일(월 일 ~ 월 일 / 총 일), 휴가사유 체크(㉠, ㉡, ㉢, ㉣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·온라인 개학 및 휴원·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</p> <p>㉡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확진환자, 의사(擬似)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</p> <p>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원)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</p> <p>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</p> </div>	<p>*좌측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함</p> <p>-성명:</p> <p>-서명:</p>
근로자	<p>○ 사업주로부터 승인받은 위의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, 해당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기지급받은 돌봄비용을 반납할 것임을 확인함</p> <p>○ 지원금 반환사유 발생시, 고용센터의 반환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,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함</p>	<p>*좌측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함</p> <p>-성명:</p> <p>-서명:</p>

위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)지방고용노동청()지청장 귀하

연말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, 12월 20일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- 「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은 한시 사업으로 연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1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는 「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」를 첨부하여 12월 1일~12월 20일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청 방식에 따라 12월 20일 이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
* 온라인 신청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 또는 우편 신청(관할 고용센터<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조>)

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-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12월 4일 이후에 일괄 신청해주시면 신속한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.
- 단, 12월 20일 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
'20.12.22.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, 사정이 생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*하고 지원금 반환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.

*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 가능